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중 소 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범위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 일부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기관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할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을 갖추고도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동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통계 작성대상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됨에 따라 그 밖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통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당 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범위를 중소기업 기술정책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통계 작성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해당 통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진흥기관 지정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중소기업 기술진흥기관 지정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포함함

나. 중소기업 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의2)

중소기업 실태조사 작성대상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8. 「중소기업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5조의2 중 “다음 각호의 업종”을 “업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7. (생 략) 가. ~ 다.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8. 「중소기업 기본법」 제25조 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 원 9. (현행 제7호와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 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 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u>다음 각 호의 업종</u> 으로 하고, 그 조사대 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5조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 상 범위 등) ----- ----- ----- ----- ----- <u>업종</u> 으로-- ----- -----. <삭 제> <삭 제>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744